

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2021. 4. 1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66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4. 5.
- 라. 회부일자 : 2021. 4. 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매입 1건임.

[취득 재산 총괄표]

(단위 : m²)

연번	사업명	소재지	토 지		비고
			지목	면적	
1	시흥계곡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시흥동 산77-1	임야	6,879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생태계류 복원, 테마숲 등)
		시흥동 산77-16	임야	1,834	

□ 시흥계곡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1건 (공원녹지과)

- 사업목적 : 시흥계곡 활성화를 통해 시흥동의 부족한 녹지·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천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
- 매입대상 : 시흥동 산77-1외 1필지 / 총 8,713m²
- 추진방법 : 시흥계곡 대부분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로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부지의 토지주 매도 의향서 접수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여 부지 확보
- 사 업 비 : 662백만원(토지매입비 656백만원, 기타 6백만원)

4.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번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흥계곡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1건임.

나. 검토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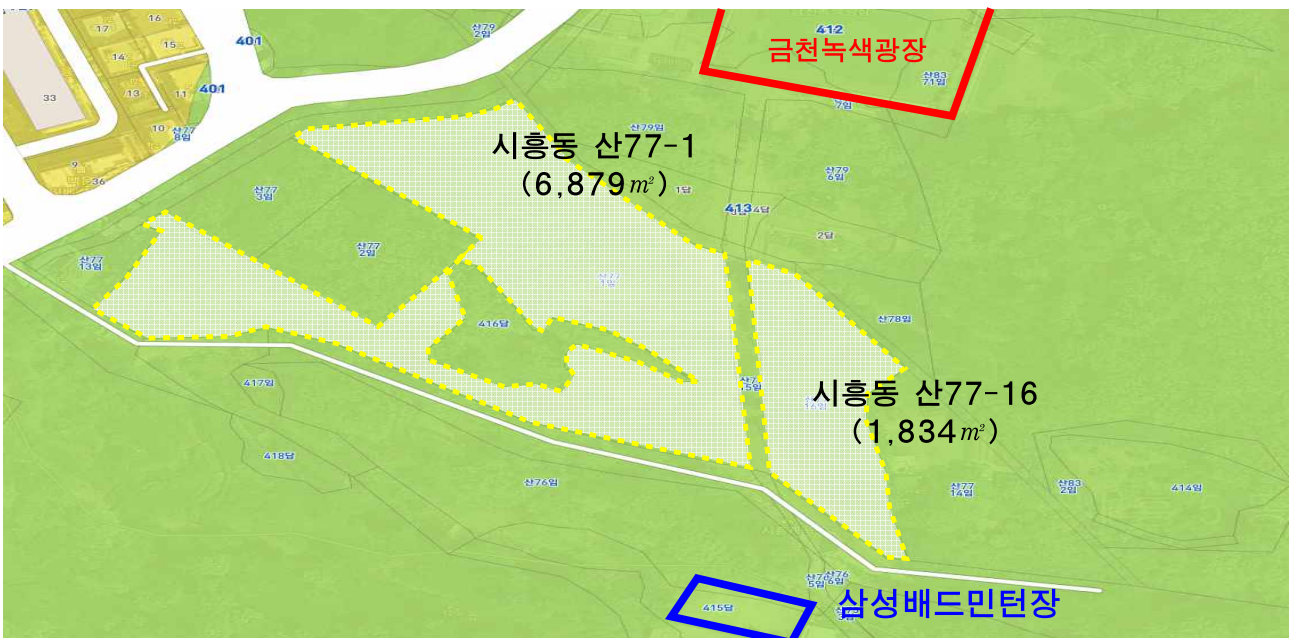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시흥계곡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
- 매입목적 : 시흥동의 부족한 녹지·여가 공간 확보 및 시흥계곡을 금천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
- 매입부지 현황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산77-1, 산77-16
 - 면 적 : 총 8,713m²(산77-1 6,879m² / 산77-16 1,834m²)
 - 토 지 주 : 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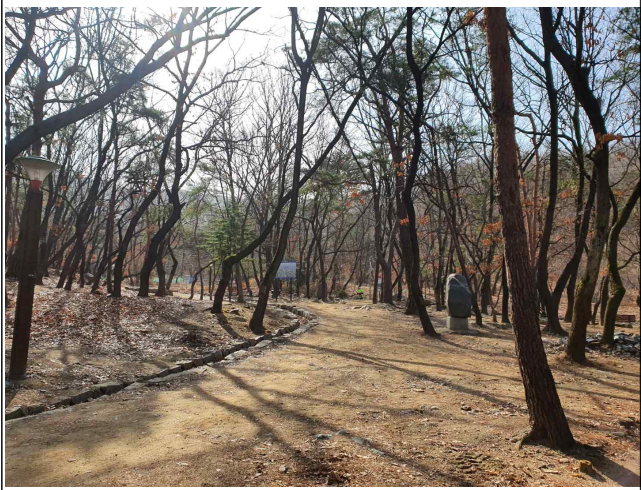
(단위 : m², 천원)

위치	지목	공부면적 (m ²)	취득면적 (m ²)	매입비 (추정가액)	비고
계		8,713	8,713	662,000	
시흥동 산77-1	임야	6,879	6,879	662,000	토지주 희망가격
시흥동 산77-16	임야	1,834	1,834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시흥계곡 전경



시흥계곡 생태계류 복원

2) 검토결과

시흥계곡 활성화사업은 시흥계곡 생태계 기능 향상, 경관회복,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1부.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